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기업명	(주)엣데이터
문서번호	2022-esg008
제ㆍ개정일	2022.01.03
담당부서	경영지원
담당자	경영지원팀장

<제 · 개정 이력>

[illegible]

<목 차>

목차명	제 · 개정일	페이지
I. 윤리규범	2022.01.03	
II. 윤리경영세부지침	2022.01.03	
III. 윤리경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2022.01.03	
IV. 윤리경영 교육 훈련 계획(예시)	2022.01.03	
V.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22.01.03	
VI. 반부패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예시)	2022.01.03	

(주)엠테이터	I. 윤리규범	제 · 개정일
		2022.01.03

□ 윤리경영 원칙

1.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윤리 경영을 실천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 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3. 임직원은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5.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6.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

□ 고객에 대한 윤리

1.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 주주에 대한 윤리

1.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 및 IR등의 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한다.

3.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제안 및 결정을 존중한다.

□ 공정 거래에 관한 윤리

1.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거래처, 협력 업체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등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 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2.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 인권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윤리규범 적용

1. 본 윤리규범은 (주)엠테이터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2. 누구든지 회사의 임직원이 본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 관리인 및 신고 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 부칙

1. 시행일

본 윤리 규범은 2022년01월03일부터 시행한다.

(주)엣데이터	II. 윤리경영 세부지침	제 · 개정일
		2022.01.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주)엣데이터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 윤리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 규범의 실천 지침으로서, 국내외 관련 가이드 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주)엣데이터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엣데이터와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처,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반부패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2장 윤리 경영 원칙

제 3조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

- ①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③ 임직원간 성적 괴롭힘·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4조 (차별금지)

- ① 임직원의 인종,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 근무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실력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제5조 (부패행위 및 사익 편취 금지)

- ①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안된다.
- ② 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윤리 담당자(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
- ④ 기타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횡령, 배임등 부패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 6조 (이해 상충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된다.
- ②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 및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7조 (부정 청탁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채용,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2.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기타 정당한 거래 관습에 반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

제8조 (회사의 재산 사적 이용 금지)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9조 (고객 가치 제고)

(주)엠펙터의 임직원은 고객 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0조 (고객 신뢰 제고)

- ① 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1조 (고객 이익과 정보 보호)

- ① (주)엣데이터의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②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③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④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제 5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 12조 (기업 가치 제고)

회사는 혁신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가치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해야 한다.

제 13조 (투명한 정보 제공)

회사는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재무제표등의 공시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조 (주주권리 보호)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 등을 존중한다.

제 6장 공정 거래 원칙 준수

제 15조 (공정 거래)

- ①(주)엠펙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영진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 준수를 적극 지원한다.
- ② 임직원은 협력업체나 거래처등의 경영 정보나 지적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한다.
- ④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장·거짓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 16조(동반성장)

- ①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7조 (환경, 안전의식 함양)

- ①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 및 보건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8조 (법규의 준수)

- ①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 ②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제 19조(사회 공헌 활동)

회사는 기업 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8장 위법 행위 발생 시 보고 의무 내부 고발 보호(신고와 보상)

제 20조 (윤리 위반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조(신고자 보호)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조(보상체계)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9장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점검 및 교육

제23조(윤리경영점검)

① ○○○○(주)는 (주)엡데이터는 윤리 경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세부지침」의 업무 적용시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 및 감사실장등 준법 담당자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주요 사안은 감사 실장 및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

② (주)엠펙터의 윤리 경영의 현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율 준수 체크 리스트를 통해 윤리 규정 이해도를 점검하고 윤리 수준의 자가 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

제24조 (윤리 경영 교육)

① 본부장 및 실장은 신입 직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교육은 1년에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은 「반부패 윤리경영실천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③ 자회사,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윤리 경영 교육을 실시한다.

④ 윤리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시, 이에 대한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03일부터 시행한다.

(주)엣데이터	Ⅳ. 윤리경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제 · 개정일
		2022.01.03

▷ 윤리경영자율준수체크리스트

구분	지표	답변
윤리규범 수립	윤리경영 규범을 명문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윤리규범이 정기적으로 점검 개정되고 있는가	
	윤리경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차별금지	인종,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근무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을 받았는가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임직원의 부패행위금지	거래처, 협력 업체등에서 부정한 금품, 향응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가	
	부패방지교육 및 준법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는가	
	부정청탁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건전한 근무환경	임직원 간 괴롭힘 사례가 있는가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가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있었는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가	
회사/고객의 비밀정보/내부정보 등 대외비 준수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였는가	
	회사의 정보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대내외로 유출한 사례가 발생했는가	
	고객 및 회사의 정보자산의 보안대책을 마련했는가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발생시 보고 의무/ 내부고발 보호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채널이 수립되어 있는가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어있는가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는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횡령/배임 금지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례가있었는가	
내부정보 활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영리행위를 포함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는가	
기타사항		

(주)엣데이터	V. 윤리경영교육훈련 계획 예시	제 · 개정일
		2022.01.03

▷ 교육목적

윤리 경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 의식의 개선을 목표로 윤리 경영 관련 교육을 다음 계획과 같이 실시한다. 이는 업무 수행 시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 경영 규범을 실천하며 회사내 부패, 부당 이익등 위법한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훈련연간계획(예시)

작성부서	경영지원	작성자 (직급/이름)	경영지원팀장	작성일	2022.06.01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계획일자	실시일자	비고
윤리교육	윤리교육	온라인	2022.01.3	2022.05.31까지	전원수료
에스케이텔레콤(주) 온라인 교육 중 윤리 교육 자료를 이용 교육 및 평가한다					

(주)엠펙터	V.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제 · 개정일
		2022.01.03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 1조 (목적)

임직원 및 관계자가 윤리규범 및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내 부패 및 이익침해 행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개인적 리스크를 방지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고 대상 및 보고 의무)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의 위반행위, 불법 및 범죄행위 (횡령, 배임, 사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감사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4조 (신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내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신고 센터는 주7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신고자는 다음의 채널 중 용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회사 홈페이지: www.atdata.net
2. 우편: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8길 5 SK V1 빌딩 2001호
3. 전화: 02-3461-0747 (내선 200번)
4. 팩스: 02-3461-0744
5. 이메일: atdata@hanmail.net

제 5조 (신고 절차)

①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 센터에 보고한다.

1. 신고자의 인적 사항, 직위 등
2. 신고 대상자
3. 신고 경위 및 사유
4. 신고 내용 및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그 파일

② 신고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 6조(신고 처리)

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자(전담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 7조 (신고자등의 비밀 보장 의무)

-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 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전담자(전담부서)에 원상 회복이나 근무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에 의한 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로 하여금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전담자(전담부서)는 보호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내부 고발 제도 교육)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 및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10조(시행일)이 지침은 2022년 01월 03일부로 시행한다.

(주)엣데이터	V. 반부패 윤리 경영 실천 서약서	제 · 개정일
		2022.01.03

(주)엣데이터 부패 윤리 경영 실천 서약서

나는 (주)엣데이터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부정 청탁도 받지 않는다.
2. 나는 법률이 금지하는 어떠한 금품등도 주지 않고 받지 않는다.
3. 나는 부정 청탁이나 수수금 지금품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나는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세부지침」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라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엣데이터

부 서 명 :

성 명 : (서명)